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6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신장식 · 차규근 · 김선민
김준형 · 김재원 · 박은정
이해민 · 조인철 · 서미화
강경숙 · 황운하 · 정춘생
서왕진 · 민병덕 · 정혜경
이용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4. ~ 8.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

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
나, 수치심·모욕감·두려
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
·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
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
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 8. (현행과 같음)